

제39회 유한철배 전국 초등부 아이스하키대회 대회요강

1. 대회기간: 2019년 10월 3일(목) ~ 10월 13일(일) 예정
2. 대회장소: 고척동 제니스아이스링크장 예정
3. 주 최: 사단법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4. 주 관: 한국초등학교아이스하키연맹
5. 참가자격: 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선수등록 완료한 선수, 임원
나. 한국초등학교아이스하키연맹에 가입한 선수, 임원
다. 기한 내 참가신청을 완료한 초등부 팀, 선수, 임원
6. 대회규정

제1조 경기방법: 토너먼트

1. 경기시간: 15분 게임(홀러타임), 2분 휴식, 정빙없음, 워업 3분,
마이너페널티 1분 30초 퇴장
* 매경기 3피리어드 종료 30초 전 정미
* 3피리어드 종료 2분 전에 1점차면 2분부터 정미
2. 승자결정방법
가. 예선/결선 무승부가 된 경우, 승부를 가리기 위해 승부샷 5회로 승부
를 결정한다. (양 팀 각 5명 지정 후 실시, 진영교체 없음)
나. 승부샷에서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1명씩 서든데스 승부샷 실시
(같은 선수 반복해서 실시 가능)
3. 디비전 승격방법: 가. 디비전 I - 하위 4팀이 디비전 II로 강등
나. 디비전 II - 상위 2팀 승격, 하위 2팀 강등
다. 디비전 III - 상위 2팀 승격, 하위 2팀 강등
라. 디비전 IV - 상위 2팀 승격
※ 참가팀 수로 인해 승강제 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제2조 경기장

1. 양 팀 벤치의 위치는 본부석을 중심으로 전면 좌측이 홈(Home)팀, 우측
이 어웨이(Away)팀이 된다.

2. 대진표 상에는 좌측에 기록된 팀이 홈팀이며, 우측은 어웨이팀이다.
3. 선수 벤치에는 등록된 임원 및 선수 이외에는 입장을 불허한다.
4. 경기장내(본부석)에는 대회임원 및 경기진행에 직간접 관련이 있는
임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5.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주심의 재량에 의해 벤치마이너를 부과할 수 있다.
6. 경기장내에는 대회기간 동안 협회 혹은 연맹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부착물(예: 현수막)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 유니폼

1. 유니폼, 팬츠, 헬멧, 스타킹은 반드시 통일시켜야 한다.
2. 유니폼은 홈(Home)팀이 짙은 색, 어웨이(Away)팀 밝은 색을 착용한다.
3. 본 협회 혹은 연맹이 사업을 위하여 요구할 경우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전원은 유니폼과 헬멧에 본 협회 혹은 연맹이 지정하는 부착물을 지정
위치에 붙여야 출전할 수 있다.
4. 본 협회 혹은 연맹 승인 없이 유니폼, 심판 복에 광고성 부착물을 붙일
수 없다.

제4조 선수 및 임원

1. 선수 및 임원은 당해 연도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등록을 필 한자로서
참가신청서에 기록된 자에 한하여 그 자격을 인정한다.
2. 한 팀은 총 30명(GK 3, 플레이어 27명)의 선수를 대회참가 신청서에
등록할 수 있으나 경기에 출전하는 엔트리는 22명(GK 2, 플레이어 20
명)으로 제한한다.
*** 경기 당일 골키퍼 이외 플레이어 10명 미만 출전시 몰수패 처리됨
(학교팀 포함)**
*** 몰수 패 시 해당 경기의 취소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대관비, 심판비,
진행비 등)에 대하여 한국초등학교아이스하키연맹에 변상하여야 함.**
단, 해당 경기만 5:0으로 몰수 처리 됨.
3. 한 선수가 한 대회에 2개 소속으로 출전 할 수 없다.
4. 대회 중 임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등록을 필하여야만 그 자격이

인정된다.

제5조 팀

1. 대회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팀은 당해 대회 최하위가 되며, 잔여 경기 및 차기 년도 출전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해당 팀은 당해 경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본 협회에 변상하여야 하며, 관련 임원은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경기도중 퇴장하여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서도 이에 준한다.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및 사고로 인하여 경기시간에 경기장에 출전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2.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팀이 대회에 불참할 경우에는 동 대회는 물론 차기 연도 동 대회 자격을 상실한다.
3. 경기장 질서를 저해하는 자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및 연맹 상벌규정에 의하여 엄중 조치한다.

제6조 소청위원회(상벌위원회)

1.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의신청을 다루기 위하여 소청위원회를 둔다.
2.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이의신청은 서면으로만 소청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의 모든 행위는 효력이 없다.
3. 소청은 분쟁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공탁금 30만 원과 함께 문서로써 제기하여야 한다.
4. 패소자의 공탁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5. 승소자의 공탁금은 환불하며, 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6. 소청에서 승소하더라도, 경기결과(승패)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7조 시상

1. 디비전 I 만 해당 대회 경기실적 및 수상경력을 인정한다.
2. 디비전 II 이하는 대회참가확인서만 발급한다.
3. 디비전 I
 - 1) 단체상: 우승, 2위, 3위
 - 2)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우승팀), 우수선수상(2위팀), 미기상(3위팀),

베스트 골키퍼, 베스트 포워드, 베스트 디펜스, 지도자상

(포지션별 수상자는 4강팀 감독, 연맹 이사회의 투표로 선정한다.)

3. 대회기간 모든 경기 해당팀에 베스트플레이어 시상(각 팀 1명)

(단, 몰수패 경기는 제외)

4. 디비전 II 이하

- 1) 단체상: 우승, 2위, 3위
- 2) 개인상: 최우수선수상(우승팀), 우수선수상(2위팀), 미기상(3위팀)
3. 대회기간 모든 경기 해당팀에 베스트플레이어 시상(각 팀 1명)
(단, 몰수패 경기는 제외)

제8조 기타

1. 심판배정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경기운영은 한국초등학교아이스하키연맹에서 결정한다.
3. 대회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각 규정에 의거하거나 한국초등학교아이스하키연맹 이사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4. 대회기간 중 긴급 조치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맹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끝.